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17호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확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정경유자동차 중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안 제3조제1항)
-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출고당시보다 저감 효율이 향상된 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2항)

- 차량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저공해 조치에 따른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 1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7
----------	-----

발의연월일 : 2016. 3. 8.

발 의 자 : 김정현·김경선·안영수
의원

(찬성자 6 인)

☐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확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정경유자동차 중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안 제3조제1항)
-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출고당시보다 저감효율이 향상된 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2항)
-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저공해 조치에 따른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3호 중 “특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량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생략)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사용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 한다.	제2조(정의)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 -----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u>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u>

1. <u>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자동차</u> 2. <u>자동차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생략) 2. <u>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u> 3. (생략)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u>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u>	<u>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u> <u><삭 제></u> <u><삭 제></u>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3. (현행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 ----- ----- ----- ----- -----. <u><단서 삭제></u>
---	--

실적으로 곤란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삭 제>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
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 연장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
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
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
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
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
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
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
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제5조 (생 략)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삭 제>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⑦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004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시
환경부 보조금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지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차량대수는 약 30,000여대이나,
당초 저공해조치 지원대상 160,000대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예
산의 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추가되는 차량들은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조치에서 명령에 의한 강제적 조치로 변경되는 것임.

나. 추계 결과

-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예산은 2019년까지 국고보조 계
속 사업으로서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년도별
국비 확보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다. 재원조달방안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분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현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입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20,144	28,540	29,767	32,449	110,900
	소 계	20,144	28,540	29,767	32,449	110,900
세출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20,144	28,540	29,767	32,449	110,900
	소 계	20,144	28,540	29,767	32,449	110,900
재원 조달		국비50% 시비50%	국비50% 시비50%	국비50% 시비50%	국비50% 시비50%	국비50% 시비50%
국 비		10,072	14,270	14,883.5	16,224.5	55,450
시비	소 계	10,072	14,270	14,883.5	16,224.5	55,450
	일반회계	10,072	14,270	14,883.5	16,224.5	55,450
	특별회계					
	기 금					
군 · 구비						
민 간						
기 타						